

이슈분석

자유무역협정과 노동기준 및 노동시장

허재준*

◆ 서론

- 우리나라는 WTO 출범 이전 GATT체제부터 지역주의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표명하면서 지역주의는 다자간 무역체제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음.
 - 그러나 GATT를 대체하며 1995년에 출범한 WTO는 무역자유화를 위한 다자체제라는 특성으로 인해 회원국간 합의도출이 어렵고, 무역자유화의 속도가 느리며, 개별국가의 이해를 충족시키기 어려워
 - 세계경제의 주축권역인 EU와 미국이 전략적 통상정책의 일환으로 지역무역협정을 추구함으로써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지역주의 확산을 거부하는 것이 불가능해짐.
 - 이에 따라 수출을 원활히 하는 제도적 환경조성이라는 측면에서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은 국가 발전전략에서 불가결한 요건이 되고 있음.
- 최근의 FTA는 재화무역뿐만 아니라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지적재산권의 보호, 경쟁조건인 공정성 개선, 금융시장 자유화, 투자규정, 환경, 노동 등 WTO가 다루지 못하고 있는 규정을 포함하는 경향이 늘고 있음.
 - 2000년 10월 노동기준이 명시적으로 협정본문에 삽입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을 미국과 요르단이 체결함.
 - 향후 우리나라가 체결하는 FTA에서 노동기준 관련조항이 규정된다면 미국-요르단 FTA가 하나의 준거가 될 수 있음.
 -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한 무역이익(gains from trade)은 원활한 구조조정을 수반할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hurjj@kli.re.kr).

때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FTA로 인해 초래되는 노동시장 변화를 점검하여 적절한 정책을 마련해야 함.

◆ 자유무역협정과 노동기준

- 미국은 다자간 논의과정에서 무역과 노동기준을 연계시키고자 노력하였으나
 - 1998년 ILO의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ILO Declaration on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을 전환점으로 하여 다자주의 논의과정에서 제재적 성격의 연계논의가 적합하지 않다고 결론 내려짐.
 - 이를 계기로 미국은 새로운 접근으로서 지역무역협정 및 쌍무적 협정에서 국제적 노동기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진행함.
- 노동기준이 명시적으로 협정본문에 삽입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은 미국과 요르단이 2000년 10월 체결한 FTA
 - 미국-요르단 FTA는 노동문제에 관한 국제적 노력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을 강화하여 노동기준 향상을 도모한다고 밝히고 있으며, 제6조에서 그와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고 있음.
 - 협정에서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제 또는 그에 관한 조항으로서 구체적으로 다음을 지칭하고 있음.
 - (a) 결사권
 -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c) 제반 형태의 강제노동금지
 - (d) 취업의 최저연령
 - (e)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
 - ILO를 통한 기존의 다자간 논의에서 보편적으로 적용가능한 노동기준은 노동비용, 즉 경쟁력과 관련되는 최저임금·안전보건·사회보장 등 근로조건과 관련된 협약이 아닌 기본권과 관련된 핵심노동기준이라는 국제적 공감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을 내용으로 담고 있음.
 - 이는 사회개발정상회의, ILO 등에서 확인된 국제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1984년 미국이 무역법에서 규정한 국제노동기준에 의거하고 있음.
- 협정의 제4항 (a)에서는 협정이 발효되면 협정국은 당사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실질적으로(effectively)

노동법을 강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협정의 제4항 (b)에서 협정국은 이를 강제하는 방법에 관하여 재량권을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 현실과 괴리되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노동법 내용을 일당사국이 강제하지 않고, 강제되지 않은 노동기준이 협정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고 상대국이 판단하면 그 상대국은 이를 의제화할 수 있을 것임.
- 물론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을 제외하면 나머지 노동기준은 무역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명이 어려워
- 양국의 무역불균형이 심하지 않으면 크게 문제삼지 않을 가능성이 큼.

○ 의제화 및 의제논의 절차에 관한 사항

- 협정의 제6조 제5항에서는 제15조 아래 설치되는 합동위원회에서 노동기준 준수 및 그 노력여부 의제로 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15조 제3항 (b)는 합동위원회가 임시 혹은 상시위원회나 작업반을 둘 수 있고 비정부관계자나 비정부기구의 의견을 청문할 수 있는 가능성 규정하고 있는데
- 이에 의하면 노동기준 준수와 관련하여 정부와 입장을 달리하는 노조 의견을 청문할 수도 있을 것임.

○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에 대한 시사점

- 미국-요르단 협정 전문(前文)에서 “요르단이 개발도상에 있고 특별한 도전을 받고 있음을 인정하면서”라는 문구를 삽입하고 있는 데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 한국과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할 경우 우리나라의 노동기준 중 문제가 되는 핵심노동기준은 결사의 자유와 단체교섭권의 문제이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크게 문제의 여지가 없다는 점에서
- 공무원의 노동3권처럼 국제기준에 비추어 미진한 노동기준의 상향조정을 전제 조건으로 내세운다거나 기타 우리나라의 노동기준 자체를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임.
- 사회개발정상회의, ILO에서 확인한 핵심노동기준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까지를 핵심노동기준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우리나라가 원하지 않는 경우 동 규정을 국제노동기준으로 간주해야 하느냐의 문제는 협정체결 협상과정에서 쟁점이 될 것임.

○ 일단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노동기준이 협정 속에 어떻게 규정되었는지에 따라 노동기준 관련이제가 등장하고 이의제기가 이루어지는 빈도와 폭이 클 수 있음.

- 2001년에 미국연방항공청의 항공안전등급 평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이미 법제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 능력을 정부행정기구가 보유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문제를 제기할 여지가 많음.
- 이것은 앞서 지적했듯이 추가적 노동기준 확립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규제력이 미진해서 의제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할 경우 문제가 될 영역이 있을 것이기 때문
- 예컨대 노사관계에서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형태의 경찰단속, 소위 3D기업의 산업안전보건 기준 미비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단속 태만, 산업연수생제도의 불합리한 운영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음.

◆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기준

- 통상의제로서의 무역과 노동기준에 관한 논의는 노동기준과 외국인 직접투자와의 관계를 포함함.
 - 개발도상국에 대한 국제투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직접투자와 노동기준간의 관계는 각별한 주목을 받는 주제이기도 함.
 - 외국인 직접투자와 핵심적 노동기준간의 직접적 관계에 대한 실증 증거는 부족하여 서로 다른 해석의 여지가 있으며 판단도 주로 국별 사례연구와 수출자유지역 내의 조건에 대한 분석에 의존
 - OECD 투자자가 비OECD국가에 대한 투자를 결정할 때 핵심적 노동기준이 배제되지는 않지만 외국인 직접투자에 대한 총체적 자료에 의하면 핵심적 노동기준이 OECD기업의 투자결정에서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OECD국가의 일부 정부는 노동권의 제약이 OECD와 비OECD 투자자들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믿음에서 노동권을 제약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됨.
 - 미국 노동성에 의하면 많은 국가들이 수출자유지역을 위한 특별한 노동관계법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으나 적어도 14개 국가가 법적으로 또는 실제적으로 노동권을 제약했음.
- 최근 우리나라도 동북아 중심국가로서 도약하기 위해 경제특구 지정계획을 입안하면서 집단적 노사관계와 개별적 근로기준을 완화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음.
 - OECD나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기업은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는데 이러한 평가는

- 현행 노동법이 비록 정리해고를 가능하게 규정하고 있지만 경영상에 긴박한 이유가 있을 때 최소 60일간의 해고협의기간과 30일의 예고기간을 두고 정리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정규직 근로자를 정리해고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점(근로기준법은 또한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이 정리해고를 할 때에는 신고의무를 두고 있음)
 - 그리고 경제발전과정에서 노사의 신뢰가 구축되지 못해 노조의 협상태도가 매우 경직적인 데 기인함.
 - 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해 보면 임금유연성과 고용유연성이 매우 높음.
 - 이러한 모순적 사실은 우리나라 기업은 복잡한 임금체계, 비정규직 채용, 외주 증가, 편법(대기발령 등) 등에 의해 임금 및 고용조정을 하고 있는 반면, 외국기업은 이러한 임금 및 고용조정 방식에 익숙하지 않은데 기인함.
-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일반적 실증연구들이 낮은 핵심적 노동기준이 무역과 투자흐름의 중요한 결정요인인 낮은 노동비용과 관련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고
- 외국인 투자자들은 기업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핵심적 노동기준이 낮거나 혹은 전혀 없고 또한 사회가 긴장되어 있는 상황보다는 높은 노동기준과 관련되는 경향이 있는 안정적인 사회분위기를 선호한다는 사실 확인에도 불구하고
 - 우리나라 정부의 경제특구에 대해 노동기준을 완화하려는 노력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음.
 - 하지만 수출자유지역 혹은 경제특구 내의 노동기준이 일반적 노동기준과 다른지에 관해서는 OECD, ILO와 같은 국제기구나 미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므로
 - 경제특구에 관한 노동기준 완화조치는 향후의 다자간 투자협정이나 자유무역협정에 문제 제기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전체 노동시장에 적용되는 노동법상의 규제를 현실에 부합하게 고치는 것이 올바른 방향임.

◆ 자유무역협정과 노동시장 변화

- 장기간에 걸친 무역자유화의 영향은 우리나라가 고속련노동집약적 재화를 수출하고
- 저속련노동 집약적인 전통적 제조업부문들은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통합 증가에 직면하여 축소되며

- 숙련노동자들과 저숙련노동자들 사이의 임금격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하는 경우 숙련노동자와 비숙련노동자의 실질임금은 비 OECD국가와의 무역의 결과 동시에 증가할 수도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일종의 거시경제적 쇼크로서 협정체결을 전후하여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요구할 것임.
- 따라서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경제주체와 불이익을 당하는 경제주체의 이해 조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 그 이해조정이 난관에 부딪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의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특히 향후의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을 미리 준비해야 함.
- 제조업의 고용 중 산업내 무역이 위주인 부문의 고용은 큰 영향을 받지 않겠지만, 산업간 무역의 형태를 띠는 부문의 고용 중 경쟁력 열위부문은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겪을 것이므로
 - 구조조정 기업 혹은 산업에 대해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의 보상 및 전직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해야 함.
 - 칠레, 중국, 미국 등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주곡, 육류 등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뒤떨어져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부문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상과 함께 현재 농업인구의 60%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연령자임을 감안하여 농촌 자영자의 노후소득에 정부보조를 늘리는 방식의 정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장 개방을 포함하는 자유무역협정이 고용 및 임금에 미치는 총체적 효과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상호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것임.
- 성장률 제고로 인한 전반적 노동수요 증가
 - 비교우위 변화로 인한 수출증가·수입감소부문의 노동수요 증가, 수출감소·수입증가부문의 노동수요 감소
 - 외국 기업이 국내에 진출하여 활동하면서 파생시키는 노동수요 증대
 - 국내 기업이 유입 자본에 더욱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자본시장 불완전성이 개선됨으로써 증가하는 노동수요
 - 국내 기업이 국내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하면서 축적하는 생산·경영상의 노하우와 정보 축적, 그리고 이를 해외시장 개척에 활용함으로써 파생될 수 있는

경쟁력 및 생산 증대에 따른 동태적 노동수요 증대효과

- 노동시장이 겪는 총체적 영향은 개방의 속도, 한국 기업이 기왕에 확보하고 있는 경쟁력과 향후 경쟁과정에서의 자생력 등이 변수로 작용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볼 때 고용 및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일 것임.
 - 경쟁격화로 산업구조조정이 가속되고 경제의 서비스화가 더 급속히 진전될 것이므로 소득분배 악화를 교정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배려가 요구됨.
 - 산업구조 고도화로 생산직 저숙련근로자의 비중이 기존의 추세보다 빠른 속도로 감소되고 노동이동이 더욱 빈번해지며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 정규직 노동에 대해서는 현실과 부합되게 노동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확충 등으로 보호수준을 높여야 함.
 - 경제의 서비스화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더욱 활발해질 것이므로 육아와 직업생활을 양립시키는 정책적 배려를 증가시켜야 함.
 - 숙련노동력에 대한 수요가 더욱 급속하게 증대할 것이므로 교육 및 직업훈련체계를 이에 대비하여 개혁해야 함.
 - 유통업부문 고용은 선진국에 비해 자영업자 및 가족노동종사자 비율이 현저하게 높는데 외국 유통업의 진출로 유통업부문 임금근로자 비중이 확대되면서 상당수는 저임금근로에 종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 경쟁격화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무고숙련직과 생산저숙련직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가질 것이므로 중소기업 및 저소득자 재산형성 및 주택구입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노동기준과 노동시장

- 집단적 노사관계법에 관한 노동기준을 국제수준에 수렴시켜온 과정을 살펴볼 때 핵심노동기준에 해당하는 노동권을 보장했을 때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대외경쟁력이 줄어들 것이라고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노조의 교섭력이 강력한 산업부문의 성장이 둔화되리라고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음.
 -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관계법 개정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크기는 노동권 보장의 정도보다는 노사간 합리적 협상규범 확립여부에 의존하며, 집단적 노사관계에 관한 노동권 보장 혹은 비보장 자체가 성장잠재력을 가로막는 것은 아님.

- 1987년 이후 1990년대 초까지의 임금상승은 집단적 노사관계법상의 근로자 권리를 보호해 준데 기인한다기보다는 과거의 일방적 임금협상 관행에 대한 반작용이 전반적인 사회민주화를 배경으로 하여 나타난 것이며, 노·사 양측의 협상관행 미숙과 함께 과거의 공권력 개입과는 다른 수준에서 정부 역할이 미진했던 데에 기인했음.
- 따라서 정부는 핵심노동기준을 국제적 규범에 수렴시키는 노력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함.
- 핵심노동기준 관련협약을 비준하지 않더라도 협약 준수노력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ILO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준수여부 및 정도에 관한 정보가 노출되고
 - 우리나라의 핵심노동기준 준수여부는 선진국그룹인 OECD의 ELSA위원회에서 꾸준히 검토 및 논의대상이 됨.
 - 그렇다고 미국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협정체결 전에 완벽한 협약비준을 약속하거나 협약비준 기준을 충족시키도록 노동법제를 바꿀 필요까지는 없음.
-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지만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듯이,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후생수준을 일방적으로 추락시키리라는 우려도 근거가 취약함.
 - 최근의 외국자본 투자는 주로 한국 시장에서의 접근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거점기지를 모색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고
 - 우리나라 노동시장 경직성의 원천은 해고법제와 노사협상 관행의 경직성에 있으므로
 - 정부는 해고법제에 관해 경영상의 이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해고절차의 정당성을 감독하고
 -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사간의 올바른 논의구조 정착에 힘써야 하며
 - 이를 위해 노사정간에 다각적인 대화채널을 두되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사용자 관행과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함.

◆ 요약 및 결론

- 미국은 다자간협의를 틀 내에서의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지역

- 적·쌍무적 협정에서 이를 반영해 왔으나
 - WTO 내에서의 연계논의가 무위로 돌아간 후 지역적·쌍무적 협정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무역과 노동기준 연계를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제외하면 국제적 노동기준과 크게 어긋나지 않은 노동기준을 가지고 있으므로
 - 우리나라와 미국이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면 미국이 미진한 우리나라 노동기준의 상향조정을 협정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거나
 - 기타 우리나라의 노동기준 자체를 자유무역협정 추진과정에서 크게 문제삼지는 않을 것이며
 - 자유무역협정은 국내 노동기준의 하향조정을 방지하는 노력을 주로 강조하게 될 것임.
 - 그러나 일단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 후에는 이미 법제상으로 확보하고 있는 노동기준을 강제하기 위한 규제능력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고 실제로 부당노동행위 감독을 잘 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는 미국이 협정당사국이 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여지는 있음.
-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은 일종의 거시경제적 쇼크로서 협정체결을 전후하여 노동시장은 급격한 구조조정을 겪게 되므로
 - 자유무역으로 이익을 보는 경제주체와 불이익을 당하는 경제주체의 이해조정을 위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고
 - 그 이해조정이 난관에 부딪치지 않도록 자유무역협정의 파급효과를 부문별로 미리 예측하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함.
- 자유무역협정 대상국에 비해 경쟁력이 뒤떨어지는 산업부문에 대해서는 협정체결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중장기 구조조정 계획을 미리 마련해야 함.
 - 구조조정 기업 혹은 산업에 대해 WTO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형태의 보상 및 전직지원시스템 등을 준비하고
 - 칠레, 중국, 미국 등 어떤 국가와 비교해도 주곡, 육류 등 농업부문의 경쟁력이 뒤떨어져 자유무역협정은 농업부문의 급격한 구조조정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 농가에 대한 직접소득보상과 함께 현재 농업인구의 60% 이상이 55세 이상의 고연령자임을 감안하여 농촌 자영자의 노후소득에 정부보조를 늘리는 방식의 정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유무역협정은 장기적으로 노동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나 소득분배 악화를 교정하고 고용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배려가 요구됨.
 - 노동이동이 더욱 빈번해지며 비정규노동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정규직 노동에 대해서는 현실과 부합되게 노동보호 규제를 완화하는 반면, 비정규노동자에 대해서는 사회보험 확충 등으로 보호수준을 높여야 함.
 - 경쟁격화로 인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사무고숙련직과 생산저숙련직간의 임금격차는 확대되는 경향을 가질 것이므로 중소기업 및 저소득자 재산형성 및 주택구입에 정책적인 배려가 필요함.
- 집단적 노사관계 개선을 통해 노동권을 보호하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했지만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하지 않았듯이, 노동시장 탄력성 제고를 위한 제반 제도 도입이 근로자의 후생수준을 일방적으로 추락시키리라는 우려도 근거가 취약함.
 - 최근의 외국자본 투자는 주로 한국 시장에서의 접근과 시장점유율 확대를 위한 투자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거점기지를 모색하는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 정부는 해고법제에 관해 경영상의 이유 자체를 규제하기보다는 해고절차의 정당성을 감독하고
 - 노사관계를 안정시키기 위해 노사간의 올바른 논의구조 정착에 힘써야 하며
 - 이를 위해 노사관계에 대한 개입의 한계를 명확히 하고 불법적인 사용자 관행과 노동자 쟁의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법집행을 해야 함.

<부록> 미국-요르단 자유무역협정의 노동기준 관련조항(제6조)

1. 양 협정국은 ILO회원국으로서의 의무와 노동의 기본 원칙 및 권리에 관한 ILO 선언 (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및 그 후속조치를 준수할 것을 재확인한다. 양 협정국은 이러한 노동원칙과 제6항에 주어진 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제반 노동권이 국내법에 의해 인정되고 보호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2. 양 협정국은 국내 노동법을 완화함으로써 무역을 촉진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따라서 각 협정국은 상대국과의 무역을 촉진하는 장치로서 국내 노동법을 양허 또는 훼손하거나, 양허 또는 훼손하려고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3. 국내 노동기준을 수립하고 그에 상응하여 노동법 및 규제를 채택 또는 수정하는 상대국의 권리를 인정하면서도 각 협정국은 자국법이 제6항에 주어진 바의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부합하는 노동기준 제공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견지에서 이러한 기준들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4. (a) 일 협정국은 본 협정이 발효되는 시점 이후 지속적 혹은 반복적 형태의 작위적 혹은 부작위적 행동을 통해 협정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형태로(in a manner affecting trade between the Parties), 실질적으로(effectively) 그 노동법을 강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b) 양 협정국은 조사, 입건, 규제, 그리고 준수문제에 관한 재량(discretion)을 행사할 권한, 그리고 보다 높은 우선순위를 갖도록 결정되어 있는 다른 노동문제를 강제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할당하는 문제에 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각 협정국이 갖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따라서 양 협정국은 일 협정국이 일련의 작위적 혹은 부작위적 행동이 이러한 재량의 합리적 행사를 반영하거나 혹은 신의에 입각한 자원배분 결정으로부터 초래되는 바의 상기 (a)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이해한다.
5. 양 협정국은 상호협력의 노동기준 증진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을 인정한다. 제15조 아래 설치되는 합동위원회는 정상적 회기동안 그와 관련하여 일 협정국이 규명한 제반 기회를 의제로서 고려한다.

6. 본 조항의 목적을 위해 “노동법”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과 직접 관련이 있는 법령이나 규제 또는 그에 관한 조항을 의미한다.
- (a) 결사권
 - (b)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 (c) 제반 형태의 강제노동금지
 - (d) 취업의 최저연령
 - (e) 최저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합당한 근로조건